

【사건번호 2022-002,003】 KOTRA 발간물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2. 사건개요

- 신청인은 출판 및 전자책 제작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발간한 책자 2종의 PDF파일을 제공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 2종*을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 게시 중이며, 해당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
 - * 이하 발간물 1, 발간물 2라 한다.
- 발간물 1의 경우, 저작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고, 공공누리 4유형*을 조건으로 이용가능함’을 표시하고 있음
 -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발간물 2의 경우,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정보는 없고, ‘발행처(KOTRA), 발행인(발행 당시 KOTRA 사장)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공공누리 1유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후 공공누리 4유형으로 교체됨(39쪽)
 - *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함
- 신청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
 - *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 ** pdf 등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제공하고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신청 데이터(발간물1, 발간물2)는 대국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성은 문제되지 않으며,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나(제10조) 양도나 이용허락 등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제45조, 제46조), 사실조사 과정에서 저작물 작성 및 권리 귀속, 이전, 이용허락 등에 관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사실확인 및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발간물에 표시된 내용, 피신청인 제출자료, 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함
- 발간물 1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 4개 국가의 정책 주요내용 및 해당 국가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각 국가별 원고를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법무,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작성하였으며,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었으므로, 발간물 1에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비록 발간물 내지에 'KOTR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표시가 원고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권리자들이 원고를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제공함에 따라(권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함), 신청인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발간물 2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 22개 국가의 글로벌 기업을 소개하고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인사 및 복지제도, 직원 및 HR 담당자 인터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발간물 2의 원고는 각 국가에 소재한 KOTRA 무역관에서 작성하였으나 실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KOTRA 임직원 외 다른 작성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발간물 2에 포함된 글로벌 기업의 직원 및 채용담당자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대상의 저작물로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 중 상당수는 발간물 2의 제작을 목적으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된 것이며*, 인터뷰 섭외 시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진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일부 기업의 경우 채용담당자의 외부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어 공표된 자료를 활용함
- 기업의 로고나 사진 등 콘텐츠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 이용 등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제한되는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제3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o 이 사건 데이터 2종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제17조 제1항 각 호).
 - 또한 제공대상 데이터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3조 제4항).

- 이 사건 관련 법령, 피신청인 제출 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발간물 1의 경우, 피신청인이 태국 등 4개국 소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제3자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 작성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권리자가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발간물 1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발간물 2의 경우, 미국 등 22개국 소재 글로벌 기업의 로고, 사진 등 콘텐츠와 해당 기업 소속 직원, HR 담당자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이들 자료를 수집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발간물 2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